한국뇌연구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2020. 10.

한국뇌연구원 시설안전팀

한국뇌연구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위탁 수집 및 운반·처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1. 개요

가. 관련 근거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2) 그 밖의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나. 수행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한국뇌연구원(연구동, 실험동물동)

다. 범위

1) 한국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의료폐기물(폐액 포함)을 적법하게 수집·운반 처리

라. 수행기간 : 수행기간(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마. 폐기물종류

폐기물명		단위	연간 배출량	
일 반 의 료 폐 기 물	고상	kg	2020년 (추정량)	86,346
	액상			
조 직 물 류 폐 기 물	고상			
	액상			
병 리 계 폐 기 물	고상		2021년 (추정량)	96,231
	액상			
손 상 성 폐 기 물	고상			
	액상			
생 물 화 학 폐 기 물	고상		2022년 (추정량)	96,231
	액상			
혈 액 오 염 폐 기 물	고상			
	액상			

2. 과업내용

가. 자격조건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7),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5) 허가를 받거나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받은 업체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분업체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수탁능력 등 적법하게 처리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및 관련서류

②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관련서류

③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이 상이한 경우 상호계약서 사본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운반비와 처리비를 구분하고, 배출자・운반자・처리자의 공동수급(공동분담)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5)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과업 요구사항

1)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등에 필요한 표지판, 소독기, 소독약 등을 비치하고 보관・관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 폐액)을 전량 수거한다.

3) 지정된 수집장소에 집하된 전량을 수거하여야 하며, 월 4회 수거 및 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뇌연구원의 추가수거요청 시, 즉시 수거 운반하여 잔량이 없도록 한다.

4)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수거 전용용기 및 전자태그 등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관계법규에서 정한 품질, 규격, 색상 등 검사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의료폐기물의 수거・상차 시, 연구원 담당자 입회하에 중량을 계근하며, RFID 적법 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법 처리시스템에 의한 인증을 받은 후 운반하여야 한다.

6) 의료폐기물의 정산은 매월 단가에 의해 처리비용을 정산하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 수집 · 운반 준수사항

1) 처리대상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른다.
2) 의료폐기물 수거는 법적기한(15일)내 1회 원칙으로 하되, 하절기 및 특별히 우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거횟수에 관계없이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3)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4) 의료폐기물 반출 후에는 반드시 보관장소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며, 냄새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의료폐기물 반출 시에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청소를 해야 한다.
6) 의료폐기물 등을 종류별로 분류, 보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관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폐기물 수거용기를 계약상대자는 충분히 확보, 공급하여야 한다.
8) 작업・수거・운반자는 항상 깨끗한 복장을 하고 안전 및 감염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 기타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중간처리자 준수사항

1) 처리업체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수탁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연구원의 폐기물담당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계약된 운반업체 또는 처리업체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처리에 대해 연구원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수거된 의료폐기물은 전량 소각하여야 한다.
4) 의료폐기물은 소각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투입하여야 한다.

마. 행정사항

1) 계약자포함 관련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환경관계법령 등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처분시설의 사용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집·운반,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연구원으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적법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관계기관 행정사항(신고사항)을 신속히 진행하여 폐기물 처분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기간 중에도 행정처리 발생 시 조치하여야 한다.

4)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 경비 증감사항은 당해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 변경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연구원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다.

5) 관련법규의 변경이나 추가, 삭제 시 연구원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모든 제반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확인할 폐기물수탁 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처리업자별로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연구원 내 시설 및 장비, 설비 등을 훼손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의료폐기물 처리(수집・운반・처리)와 관련되어 본 원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어 환경오염 등의 문제, 불법매립, 무단투기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9) 의료폐기물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처분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위반으로 연구원에 피해를 입힐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과업내용의 일부로 하고, 연구원의 관리 담당자, 책임자의 별도 요청 및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